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바뀐다

제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토론회

| 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시험부

제7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토론회』가 9월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본 토론회는 장향숙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가 주관하였으며, 보건복지부, 학계, 사회복지 현장에서 300여명이 참석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 300여명의 현장사회복지사, 예비사회복지사들이 참석해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8일부터 15일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 61,579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실시된 '사회복지사 자격실태조사'를 근거로 개최되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문제점 중 사회복지사 또는 복지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존속 여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규정(교과내용, 학점 및 시수 포함),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인증제 도입에 대한 내용이 토론회에서 다루어졌다.

본 연구에는 김범수 교수(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 위원장)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 이기영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명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연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교육과정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교육현장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교과과정의 질적 내실화나 전문성, 정체성의 확보 측면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어 왔으나, 여기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교과목 규정과 실습교육 및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규정

현행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1〕)에서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 교과목만을 규정하고 각 과목에 대한 학점 및 이수시간과 교육자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교과목

의 기본 기준이 되는 학점과 시간이 여러 형태로 달리 적용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즉, 동일 교과목을 1학점 1시수로 수강하거나 3학점 3시수로 수강하거나, 모두 동일하게 과목이수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규정은 대부분의 특수대학원들이 교과목을 2학점 2시수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명분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학부 3학점보다도 낮은 수준으로서, 대학원에서의 취득학점(필수 6, 선택 2)이 학부(필수 10, 선택 4)보다 못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규정과 더불어, 학제에 따른 교육내용의 차별화 및 고급화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이런 제도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무자격자가 시수나 교육 내용에 상관없이 해당과목을 강의하고 과목이수에 대한 증명을 해 주는 사례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에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으로 학점이나 시수 규정 없이 14개 교과목 명칭만을 규정하고 있다. 향후 법령개정 시 이수해야할 교과목에 대한 학점 및 시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들의 93.9%의 절대 다수가 향후 관련 법령개정 시 규정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10명 중에 9명 이상이 학점 및 시수에 관한 규정 명시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법에는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으로 학점이나 시수 규정 없이 14개 교과목명칭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교육과정을 위한 시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표1〉 이수 과목 학점 및 시수 규정 명시에 대한 의견

(n=6,405)

변 인	구 분	빈 도(%)
이수과목 학점 / 시수 규정 명시 여부	매우 필요함	4611(72.0)
	필요함	1404(21.9)
	보통	290(4.5)
	불필요함	78(1.2)
	매우 불필요함	22(0.3)

법령개정시 학점 및 시수 명시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57.1%가 3학점이라고 응답하였고, 2학점은 23.2%로 나타났다.

〈표2〉 학점 및 시수 규정이 필요시, 적정 학점 및 시수에 대한 의견

(n=6,305)

변 인	구 분	빈 도(%)
적정 학점 및 시수	1학점 (1시간)	1150 (18.2)
	2학점 (2시간)	1464 (23.2)
	3학점 (3시간)	3599 (57.1)
	기 타	92 (1.5)

실습교육

실천학문인 사회복지학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교과목이 「사회복지현장실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학 교과과정에서도 실습을 필수과목으로 규정하고, 대학과 현장에서 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습교육의 비전문성과 불충분성, 과다한 학생 수로 인해 실습기관 수의 부족, 대학과 실습기관 간 유기적 관계형성의 미흡, 실습교육 모델 부족, 실습교육을 위한 인프라 부족 등(양옥경, 2005; 최명민 외, 2005)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두 차례의 견학이나 보고서, 강의 등을 실습으로 인정하거나, 제대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에서 수행한 실습도 시간만 채우면 실습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 하고 있다.

〈표3〉 보건복지부 실습기관인증제 도입에 대한 의견

(n=6,405)

변 인	구 분	빈 도(%)
보건복지부 주관 실습기관인증제 도입	매우 필요함	4478 (69.9)
	필요함	1381 (21.6)
	보통	546 (8.5)
	필요 없음	0 (0.0)
	전혀 필요 없음	0 (0.0)

"사회복지사가 국가자격제도에 의하여 부여되는 자격임에도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협회를 중심으로 ○○복지사라는 명칭과 자격증을 남발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이외에도 복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정부처가 나타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국가에서 제대로 검증도 받지 않은 채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자격증을 발급하면서 마치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동일하다고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받아야 교과목 이수로 인정이 가능한 가칭 실습기관인증제의 도입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전체응답자의 91.5%가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실습기관 인증제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의 의견을 나타냈다.

이는 현행 사회복지 현장실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자성적인 측면과 사회복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적인 측면, 사회복지 현장실습에 대한 기관의 책임성 강화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조속히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복지교육과 사회복지현장간의 체계적인 실습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과정 존속 여부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을 통해 6주에 24주기간 내의 속성으로 사회복지사 2급 또는 3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의 63.1%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4.7%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불과 3.6% 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의 87.8%가 현행의 속성 양성교육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표4〉 사회복지사 속성 양성교육과정 지속에 관한 의견

(n=6,405)

변 인	구 분	빈 도(%)
사회복지사 속성 양성교육과정 지속 여부	반드시 폐지	4041 (63.1)
	폐지	1581 (24.7)
	상관없음	335 (5.2)
	반드시 지속	228 (3.6)
	모르겠음	220 (3.4)

이처럼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속성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주된 이유는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 4년제 또는 동일학력수준의 교과과정을 이수해야만 1급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고, 다시 국가시험을 통해서만 자격이 부여되는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행의 속성 양성교육과정은 사회복지직의 전문성을 훼손시키고 양질의 사회복지사를 배출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격제도의 현황과 과제

전문 자격제도가 반드시 관철해 나가야 하는 조건은 전문직의 업무독점과 명칭독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는 자격신설 당시부터 이러한 내용이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다. 때문에 최근 사회복지사 자격을 둘러싸고 유사명칭 문제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와 유사한 간병복지사, 노인복지사, 문화복지사 등 '복지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본 결과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63.2%가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조사 대상자들의 25.7%가 가능한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의 89%가 사회복지사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은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표5〉 사회복지사와 유사한 용어 사용에 관한 의견

(n=6,405)

변 인	구 분	빈 도(%)
사회복지사 유사한 명칭 사용	전면적인 금지	4049 (63.2)
	가능한 금지	1647 (25.7)
	상관없음	344 (3.8)
	모르겠음	238 (3.7)
	모두 허용	227 (3.5)

사회복지사가 국가자격제도에 의하여 부여되는 자격임에도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협회를 중심으로 ○○복지사라는 명칭과 자격증을 남발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이외에도 복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정부처가 나타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국가에서 제대로 검증도 받지 않은 채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자격증을 발급하면서 마치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동일하다고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비해 의료법과 약사법 등 다른 전문직종의 법령을 참조해보면, 전문자격자의 명칭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외에도 복지인마을(www. weltare. net)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급수에 따른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사회복지 전문직화의 내적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관련).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자의 경우 공통표준 직무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사정, 평가 및 종결, 사후관리, 지역사회연계망 구축, 2급 및 3급 관리, 업무수행도 평가, 상담, 실습지도 등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표준 직무로 사회복지사 1급 보조, 프로그램 개발, 의뢰 이유 및 기본정보 파악, 정보제공, 생활지도,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행정문서 작성 및 관리, 시설안전관리 및 공동 물품관리 등을 주 업무로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 급수별 수행직무 구분은 자격에 따른 업무수행의 기준이 되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의 근거가 될 것이며, 사회복지 업무 수행체계 확립 및 처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토론회를 통하여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그에 따른 조건과 위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온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재정리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토론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토대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마련할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함은 물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하여 사회복지를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6〉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및 약사법 명칭관련 규정

(n = 6,405)

구 분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 (동일명칭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약사법 제3조의2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한약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자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토론회
(김범수, 허준수, 이기영, 최명민, 2006)